



**취업창업지원업무 표준처리지침**

|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|
| 규정번호 | 3-4-33     |      |   |
| 제정일자 | 2018.01.02 |      |   |
| 개정일자 |            |      |   |
| 개정번호 | Ver.0      | 총페이지 | 2 |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생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학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취업창업지원업무의 처리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취업창업지원업무)** 취업창업지원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이른다.

1.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업무
2. 학생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 업무
3. 취업 알선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업무
4. 산업체 견학 및 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
5. 각종 취업통계 관리 업무
6. 학생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 업무

**제3조 (업무주관부서)**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, 산업체 방문 및 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산학협력처가, 창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은 산학협력단과 기술창업지원센터가 그 지원업무를 주관한다.

**제4조 (업무수행단계)** 취업창업지원업무는 매 학년도마다 업무정책수립, 사전조사 및 분석, 계획수립, 시행, 효과성평가, 개선사항 도출, 환류의 7단계를 거쳐 시행한다.

**제5조 (업무정책수립)**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매 학년도 업무개시 전에 지원업무별로 업무의 목적, 성과목표, 추진체계, 업무수행단계, 세부업무 영역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 업무정책을 수립한다.

**제6조 (사전조사 및 분석)**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각 지원업무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.

**제7조 (계획수립)**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구체화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 시행계획은 목적, 성과목표, 절차, 방법 및 예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.

**제8조 (시행)**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취업창업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9조 (효과성평가)** 당해 학년도의 취업창업지원업무가 종료되면 소관 위원회에서는 효과

성을 평가한다.

1. 효과성평가에는 정량지표평가 및 검사 또는 만족도조사 등의 정성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2. 지원업무별 소관 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다.

| 지원업무구분                    | 소관 위원회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        | 취업창업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생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 업무   | 취업창업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취업 알선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업무     | 취업창업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체 견학 및 산학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| 취업창업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각종 취업통계 관리 업무             | 취업창업운영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생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 업무   | 취업창업운영위원회<br>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<br>캠퍼스타운사업단 운영위원회 |

**제10조 (개선사항도출)** 소관 위원회는 효과성평가에 기반하여 해당 지원업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한다. 효과성평가 결과와 도출된 개선사항은 해당 업무주관부서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**제11조 (환류)**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취업창업지원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01월 02일로부터 시행한다.